



전 화 : (02) 599-8969 **법무법인 케이씨엘** 팩시밀리 : (02) 599-89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508호 (우: 06601)

수 신: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일 자: 2019. 11. 21.

제 목: 위탁기간 도래시 연장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회신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위 제목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 회신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다 음

I. 질의의 배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립체육시설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체육시설 7개소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고, 그동안 수년간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갱신해 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탁기간 도래시 연장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당 법무법인에게 질의를 하였던 바, 당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II. 질의의 내용

위탁기간 도래시 연장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Ⅲ.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 법령의 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4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 위탁기간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 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할 경우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갱신시 또는 연장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오히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듯이, 갱신으로 인한 위탁기간이나 연장 위탁기간 등을 3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귀 구의 입장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참고로,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 등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

년 이내로 하면서 갱신할 때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갱신기간을 1년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탁기간 도래시 연장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진행한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추후 필요할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절히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결론

1. 위탁기간 도래시 연장을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진행한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후 필요할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절히 개정하여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의견은, 귀 구가 제공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 성 철
담당변호사 최 영 식
(직인생략)